

# 하반기 시도교육청 체육담당 과장 회의자료

<2016. 10. 5.(수), 인성체육예술평교육과>

## 1 학교운동부 운영 관련 청탁금지법 적용

### □ 청탁금지법 시행(16. 9. 28.)

- (추진배경)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적용대상자들에 대한 연수 등을 통한 안내 교육 필요
- (대상기관 및 대상자) 청탁금지법 관련 법령조문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공공기관"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·단체를 말한다.  
라.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, 「유아교육법」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 
각급 학교 및 「사립학교법」에 따른 학교법인
2. "공직자등"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.  
다.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

- 적용대상 : 학교운동부지도자 포함

### □ 학교운동부 운영 예산집행

- 예산집행 : 학교운동부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중 학부모 부담금 (학교운동부지도자 인건비, 전지훈련비 등)을 수익자 부담 형식으로 정해진 법령에 따라 절차를 준수하여 집행
- 관련법령 :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, 초중등교육법 제30조·제32조

#### ※ 학부모 부담금 집행 절차

· 학부모 동의 ⇒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⇒ 학교회계 편입 ⇒ 학교장 결재 후 집행

※ 학부모 부담금은 학부모 동의(가정통신문 활용)를 거쳐 학교운동부 운영비 (인건비, 간식비, 전지훈련비 등을 포함)를 통합적으로 학교에서 징수하여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함

### □ 학교운동부 운영 청탁금지법 위반사례

- (금품수수) 학교운동부지도자가 학부모로부터 금전 등 재산적 이익, 음식물·주류·골프 등의 접대·향응 또는 교통·숙박 등의 편의 제공
- (출석인정) 학생선수가 정규수업에 참여하지 않고, 훈련에 참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석처리 하지 않고 출석을 인정하는 경우